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26
----------	------

제출년월일 : 2011. 11.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 도내 타 시군은 시의적절하게 당직비를 인상 현실화 하였으나, 우리시는 2008. 1. 1일 이후 4년간 당직수당이 동결되었으며, 도내에서 가장 적은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직원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직근무수당 상향 조정 (안 제7조제5항)
 - 평일숙직 3만원 ⇒ 6만원
 - 일직·휴일전숙직 5만원 ⇒ 8만원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10.19.~11.08.) 결과 : 의견접수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7조에 따라”로, “선서를 하여야”를 “선서하여야”로 한다.

제3조 중 “성실로서”를 “성실로써”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또는”을 “공무원이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개될 경우”를 “공개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개될 경우”를 “공개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령 및”을 “법령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직자행동률”을 “공직자 행동률”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하면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직장분위기”를 “직장 분위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당직 및 비상근무)”를 “(당직과 비상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를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그 외”로, “문서처리 및”을 “문서처리와”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를 “일직·숙직·방호원·그 밖”으로, “발생한”을 “발생했을”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그 밖에 이에 따르는

비상사태의 발생과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를 “당직과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로, “당직 및”을 각각 “당직과”로, “하여서는 안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를 “당직과 비상근무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공휴일 일직 근무자에게는 8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소비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임무”를 “임무”로,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외”를 “발생했을 때에는 전화·전보·그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했을 때에는 바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이나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겸임근무)”를 “(겸임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하기 위하여 본직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을 “복무는 겸임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겸임근무”를 각각 “겸임 근무”로, “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을 “될 때에는 겸임기관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파견근무)”를 “(파견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4에 따라”로, “파견근

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을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하기 위”로, “기관의 장의”를 “기관장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을 “파견 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로,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을 “기관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을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으로, “복무에 관하여”를 “복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때”로, “직무수행 기타”를 “직무수행,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중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를 “공무원이 사무인계나 잔무처리 상 필요하다면”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복장등)”을 “(복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무중 그”를 “근무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은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근무시간등의 변경)”을 “(근무 시간 등의 변경)”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를 “(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로 한다.

제17조 중 “공가 및”을 “공가,”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임신·출산·자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을 하기 위한 휴직

3.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하는 휴직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를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로,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을 “자에게는 다음 해에 한정”으로, “가산한다”를 “더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5항에 따른”으로, “잔여”를 “나머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연가계획 및 허가)”를 “(연가계획과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을 “공무원과 배우자의 부모생신일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을 “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제19조제3항 중 “오전 또는”을 “오전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을 “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하면 공무 수행상”으로, “없는 한 이를”을 “없다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을 “않았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연도의 잔여”를 “해당 연도의 나머지”로, “발생한 경우”를 “발생했을 때”로, “범위안”을 “범위”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경우”를 “이때”로, “차년”을 “다음 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자녀의 결혼

제19조제6항제2호 중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를 “배우자·본인·배우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을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와”로,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를 “연가일수에서 뺀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달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때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달로 나누어 계산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때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끊어 버린다.

제20조제3항 중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을 “부상외의 사유로 말미암은 지참·조퇴·외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붙은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를 “때”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때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한 지참·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를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를 “전염병에 걸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을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로,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요양이 필요할 때”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일이상일”을 “7일 이상일”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해당할 때에는 공무에 직접 필요한 기간동안의 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병역법」 기타”를 “「병역법」, 그 밖의”로, “의한”을 “따른”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동원·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제22조제3호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제22조제7호 중 “교통차단 기타”를 “교통차단, 그 밖”으로, “불가능할”을 “불가능할”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를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국가단위”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본인이 결혼 또는 자녀를 입양하거나 기타”를 “본인 결혼·자녀 입양· 그 밖의”로, “경우”를 “때”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를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게는”으로, “출산후”를 “출산 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을 “이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산 또는 사산”을 각각 “유산·사산”으로,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을 “이내면 유산·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을 “이내면 유산·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을 “이상이면 유산·사산”으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임신한 경우의”를 “임신했을 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생리로 인한”을 “생리때문에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년미”를 “1년 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수업기간에 대”를 “수업기간을 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을 “풍해·수해·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당한”으로,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공무원의”를 “공무원이”로, “학습시설)행사에 참석할 경우”를 “학습시설) 행사에 참석할 때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이나 공휴일)”으로 한다.

제25조 중 “휴가일수”를 “휴가 일수”로 한다.

제25조의2 중 “범위내에서 공무외”를 “범위에서 공무 외”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영리업무의 금지)”를 “(영리 업무의 금지)”로 한다.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 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를 “제57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확장 그”를 “확장·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지 또는”을 “지지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를 “따른 공직선거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에 참가 또는 원조”를 “참가·원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당·그 밖의 정치단체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후

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집회·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배부하거나 착용·착용권유·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어떤 이유로도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정당·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제28조 중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2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총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u>선서를 하여야</u> 한다.</p> <p>②·③ (생략)</p> <p>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중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u>성실로서</u>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p> <p>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u>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u>.</p> <p>1. 법령에 <u>의하여</u> 비밀로 지정된 사항</p> <p>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u>공개될 경우</u>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p>	<p>제2조(복무선서) ①----- ----- ----- <u>제47조에 따라</u> ----- ----- ----- <u>선서하여야</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책임완수) ----- ----- ----- <u>성실로써</u> ----- -----.</p> <p>제3조의2(비밀엄수) <u>공무원이나</u> ----- ----- ----- <u>사용해</u> <u>서는 안 된다</u>.</p> <p>1. ----- <u>따라</u> ----- -----</p> <p>2. ----- ----- <u>공개되면</u> ----- -----</p>

현 행	개 정 안
을 줄 수 있는 경우	-----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u>공개될 경우</u>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3. ----- ----- <u>공개되면</u> ----- -----
4. <u>기타</u>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u>그 밖에</u> ----- ----- ----- -----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u>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u>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 <u>법령과</u> ----- -----
②공무원은 별표 2의 <u>공직자행동</u>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u>공직자 행동</u> -----.
제5조(친절·공정) ①·② (생략)	제5조(친절·공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무원은 직무를 <u>수행함에 있어</u>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u>수행하면서</u> ----- -----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u>직장분위기</u> 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 <u>직장 분위기</u> ----- -----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p> <p>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⑤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만원의 당직수</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당직과 비상근무) ① 휴일이 나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그 외 ----- 문서처리와 ----- 일직·숙직·방호원·그 밖----- 발생했을 ----- 하여야 -----.</p> <p>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그 밖에 이에 따르는 비상사태의 발생과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당직과 비상근무자는 허락없이 ----- 당직과 ----- 해서는 안 된다.</p> <p>④ 당직과 비상근무에 -----.</p> <p>⑤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p>

현행	개정안
<p>당을 지급한다. 단,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직 근무자에 한하여는 5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p>	<p>급한다. 다만,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공휴일 일직 근무자에게는 8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p>
<p>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원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8조(출장공무원) ①----- ----- ----- 해당 ----- ----- ----- 소비해서는 안 된다.</p>
<p>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p>	<p>②----- ----- 임무----- ----- 발생했을 때에는 전화·전보·그 밖----- -----</p>
<p>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p>	<p>③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했을 때에는 바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이나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p>	<p>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하기 위하여 본직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 복무는 겸</p>

현 행	개 정 안
<p>관하여는 <u>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p> <p>②<u>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u>임기관장</u>----- -----.</p> <p>②<u>겸임 근무</u>----- ----- ----- <u>될 때에는 겸임기관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장</u>----- ----- <u>통지하여야</u> -----.</p>
<p>제10조(파견근무) ①<u>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p> <p>②<u>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10조(파견근무) ①<u>법 제30조의 4에 따라</u> ----- <u>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하기 위</u>----- ----- <u>기관장의</u> ----- -----.</p> <p>②----- <u>파견 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u> ----- --<u>기관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장</u>----- ----- <u>통지하여야</u> -----.</p>
<p>③<u>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u></p>	<p>③----- <u>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u> ----- ----- <u>복무</u>----- ----- ----- -----</p>

현행	개정안
<p>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p>	<p>-----, 이때 ----- ----- 직무수행, 그 밖의 ----- -----.</p>
<p>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공무원이 사무인계나 잔무처리 상 필요하다면 -----.</p>
<p>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p>	<p>제12조(복장 등) ①----- 근무 중 ----- -----.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은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p>
<p>제13조(근무시간) (생략)</p>	<p>제13조(근무 시간) (현행과 같음)</p>
<p>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생략)</p>	<p>제14조(근무 시간 등의 변경) (현행과 같음)</p>
<p>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생략)</p>	<p>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현행과 같음)</p>
<p>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u>공가</u>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p>	<p>제17조(휴가의 종류) ----- ----- 공가, -----.</p>
<p>제18조(연가일수) (생략)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p>	<p>제18조(연가일수)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p>

현행	개정안
<p>「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p> <p>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p> <p>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p> <p>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p> <p>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p> <p>1. 병가를 얻지 <u>아니한</u> 공무원</p> <p>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u>잔여</u>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p>	<p>「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p> <p>1. 임신·출산·자녀----- -----</p> <p>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을 하기 위한 휴직</p> <p>3.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하는 휴직</p> <p>③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 ----- ----- -- 자에게는 다음 해에 한정-- ----- ----- 더한다.</p> <p>1. ----- <u>않은</u> -----</p> <p>2. 제19조제5항에 따른 ----- ----- <u>나머지</u> -----</p>

현행	개정안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p> <p>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p> <p>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p>	<p>제19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 ----- ----- 공무원과 배우자의 부모생신일이나 ----- ----- -----.</p> <p>②----- ----- 자에게는 연 2회 이상----- ----- .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원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p> <p>③----- 오전이나 ----- ----- -----.</p> <p>④----- 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하면 공무수행상 ----- 없다면 -----.</p> <p>⑤----- 제18조에 따른 ----- ----- 해 당 -----</p>

현행	개정안
<p>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 <u>않았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u>----- ----- -----, <u>이때</u> ----- ----- -----.</p>
<p>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p>	<p>⑥----- --- <u>해당 연도의 나머지</u> ---- ----- <u>발생했을 때</u>----- ----- --- <u>범위</u>----- ----- <u>해당</u> ----- ----- ----- <u>이때</u> ----- ----- <u>다음 연</u>----- -----.</p>
<p>1. <u>본인 및 자녀의 결혼</u> 2. <u>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u></p>	<p>1. <u>본인·자녀의 결혼</u> 2. <u>배우자·본인·배우자</u>----- -----</p>
<p>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u>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u></p>	<p>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u>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와</u> ----- ----- ----- <u>연가일수에서 뺀다.</u></p>
<p>②<u>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u></p>	<p>②<u>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한</u></p>

현행	개정안
<p>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p> <p>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p> <p>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p>	<p>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달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때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달로 나누어 계산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때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끊어 버린다.</p> <p>③----- 부상 외의 사유로 말미암은 지참·조퇴·외출-----.</p> <p>④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붙은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p> <p>제21조(병가) ①----- ----- ----- ----- 때----- 범위----- -----, 이때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한 지참·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p>

P7P

현행	개정안
<p>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 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p>
<p>1. <u>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p> <p>2. <u>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u></p>	<p>1. <u>질병이나 부상 때문에</u> ----- -----</p> <p>2. <u>전염병에 걸린</u> ----- ----- -----</p>
<p>②시장은 <u>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u></p>	<p>②----- <u>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u> ----- ----- <u>요양이 필요할 때</u>----- ----- <u>범위</u>-----.</p>
<p>③병가일이 <u>7일이상일</u>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u>첨부하여야</u> 한다.</p>	<p>③----- <u>7일 이상일</u> --- ----- <u>붙여야</u> -----.</p>
<p>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u></p>	<p>제22조(공가) ----- ----- ----- <u>해당할 때에는 공무에 직접 필요한 기간동안의 휴가</u>-----.</p>
<p>1. 「<u>병역법</u>」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등에 응하거나 <u>동원 또는 훈련</u>에</p>	<p>1. 「<u>병역법</u>」, 그 밖의 ----- ----- <u>따른</u> ----- ----- <u>동원</u></p>

현행	개정안
<p>참가할 때</p> <p>2. <u>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기관에 소환된 때</u></p> <p>3. <u>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u></p> <p>4. (생략)</p> <p>5. 「<u>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u>」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p> <p>6. 「<u>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u>」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u>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u></p> <p>7. 천재지변, <u>교통차단</u>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p> <p>8. <u>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u></p> <p>9. (생략)</p> <p>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u>본인이 결혼 또는 자녀를 입양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u></p> <p>②<u>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u></p>	<p><u>·훈련</u>-----</p> <p>2. <u>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u></p> <p>3. <u>법률에 따라</u> -----</p> <p>4. (현행과 같음)</p> <p>5. ----- ----- 제26조에 따른 -----</p> <p>6. 「<u>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u>」 제29조에 따른 <u>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u></p> <p>7. ----- <u>교통차단, 그 밖</u>----- <u>불가능할</u> --</p> <p>8. <u>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국가단위</u> -----</p> <p>9. (현행과 같음)</p> <p>제23조(특별휴가) ①----- <u>본인 결혼·자녀 입양· 그 밖의</u> ----- <u>때</u>----- ----- <u>따른</u> -----</p> <p>②<u>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게는</u> -----</p>

현행	개정안
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⑤생후 <u>1년미만</u> 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u>1년 미</u> ----- ----- -----.
⑥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 ----- ----- <u>수업기간을 위</u> ----- ----- -----.
⑦ <u>풍해·수해·화재등</u>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u>풍해·수해·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당한</u> ----- ----- ----- <u>5일 이내</u> ----- ----- -----.
⑧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된 <u>학습시설</u>)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 <u>공무원이</u> ----- ----- <u>학습시설</u> 행사에 참석할 때에 ----- -----.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생략)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이나 공휴일) (현행과 같음)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u>휴가일수</u> 를 초과한 휴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 ----- <u>휴가 일수</u> -----

현행	개정안
<p>가는 결론으로 본다.</p>	<p>-----.</p>
<p>제25조의2(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u>범위내에</u> <u>서 공무원의</u> 목적으로 국외여행 을 할 수 있다.</p>	<p>제25조의2(공무원의 국외여행) - ----- 범위 <u>에서 공무원의</u>----- -----.</p>
<p>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생략)</p>	<p>제26조(영리 업무의 금지) (현행 과 같음)</p>
<p>제27조의2(공무원의 범위) 「지 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 <u>정에 의한</u> 공무원의 범위는 다 음 <u>각호</u>와 같다.</p>	<p>제27조의2(공무원의 범위) ----- ----- 제3조제3항에 <u>따른</u> ----- -- <u>각 호</u>-----.</p>
<p>1. (생략)</p> <p>2. 선거에 <u>의하여</u> 취임한 지방 자치단체의 장</p>	<p>1. (현행과 같음)</p> <p>2. ----- <u>따라</u> ----- -----</p>
<p>제27조의3(정치적 행위) ① 「지 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u>있어서의</u> 정치적 행위는 다음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 다.</p>	<p>제27조의3(정치적 행위) ① ----- ----- 제57조에 따 <u>른</u> ----- <u>각</u> <u>호</u>----- -----.</p>
<p>1. 정당의 조직·조직의 <u>확장</u> <u>그 밖의</u>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p>	<p>1. ----- <u>확장·그</u> ----- -----</p>
<p>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u>지</u> <u>지</u> 또는 반대하는 것</p>	<p>2. ----- ---- <u>지지하거나</u> ----</p>

현 행	개 정 안
<p>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p>	<p>3. ----- 따른 공직선거에서 ----- -----</p>
<p>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p>	<p>②----- 따른 ----- ----- 제1항에 따른 ----- ----- 각 호 ----- -----.</p>
<p>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p>	<p>1. ----- ----- 참가·원조 -----</p>
<p>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p>	<p>2. 정당·그 밖의 정치단체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방해하는 것</p>
<p>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p>	<p>3.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집회·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p>
<p>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p>	<p>4. 정당·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p>

현행	개정안
<p><u>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u></p> <p>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p> <p>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복식 등을 제작·배부하거나 착용·착용권유·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어떤 이유로도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정당·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u></p> <p>제28조(준용) ----- -----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p> <p>제29조(시행규칙) ----- 시행에 ----- -----.</p>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0700호, 2011. 5.23, 일부개정]

-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및 관련조문

- 의 안 명 :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련조문 : 안 제7조제5항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공휴일 일직 근무자에게는 8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2. 비용추계 내용

가. 비용발생의 요인

- 당직근무수당 상향 조정
 - 평일숙직 3만원 ⇒ 6만원
 - 일직·휴일전숙직 5만원 ⇒ 8만원

나. 추계의 전제

- 근무현황 : 481일 / 5,885명
 - 숙직(시청) : 1,825명 (365일×5명)
 - 일직(시청·사업소·읍면동) : 4,060명 (휴일116일×35명)
※ 시청 5, 도서관·공공시설·체육시설 각1, 농업기술 2, 읍면동 각1
- 현 예 산 : 269,350천원
 - 숙직수당 : 66,350천원 (5명×(30천원×249일+50천원×116일))
 - 일직수당 : 203,000천원 (35명×50천원×116일)
- 소요예산 : 445,900천원 (증 176,550천원)
 - 숙직수당 : 121,100천원 (5명×(60천원×249일+80천원×116일))
 - 일직수당 : 324,800천원 (35명×80천원×116일)

다. 추계의 결과

- 총지출비용은 445,900천원으로, 연간 176,550천원 추가소요 예상

라. 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비용추계표 별첨

3. 작성자 : 기획행정국 총무과장 김 용 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445,900	445,900	445,900	445,900	445,900	2,229,500
일· 숙직수당	일직	324,800	324,800	324,800	324,800	324,800	1,624,000
	숙직(토요일)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116,000
	숙직(금.공휴일전일)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116,000
	숙직(평일)	74,700	74,700	74,700	74,700	74,700	373,500
재원 조달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 조 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 방 세	445,900	445,900	445,900	445,900	445,900	2,229,500
	세외수입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